

## □ 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시행 2005. 2.16] [제3420호, 2005. 1.15,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찬·발간·보급 기타 시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①시보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시의회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개정 2005.01.15)

②제1항에 의한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자치법규란

가. 시의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 2. 고시 또는 공고란

가. 시, 시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공단·공사 또는 시가 출연한 재단 등(이하 "시 및 시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법규"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나.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사업중 시보에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규로 규정된 사항

(개정2005.01.15)

#### 3. 시의회란

가. 시의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시의회 회의의 개회·폐회·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시의회소관사항중 시의회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 4. 삭제(2005.01.15)

#### 5. 삭제(2005.01.15)

#### 6. 기타란

가. 시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다. 삭제(2005.01.15)

라. 이전에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시민 또는 시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 사항은 자치법규의 번호순으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게재 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 제3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는 법무담당관이,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시보발행일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시보의 발행)

①시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5.01.15)

②시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 (그3)··· 호로 발행한다.

③시보는 인쇄발간과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한다.

④시장은 매분기마다 그 분기에 발행한 시보의 종합목록을 발행한다.

### 제6조(관리 및 열람 등)

①시장은 시와 시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와 그 소속행정기관 및 기타 관련기관에 시보를 보급하여야 하며,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01.15)

②삭제(2005.01.15)

③시와 시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와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자료실에 시보를 비치·관리하고, 온라인전산망에 게시된 시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관련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5.01.15)

### 제7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시보의 복제 및 보급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는 시장과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시보의 효력)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